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2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김예지·서미화·김상욱

정성국 · 고동진 · 이종배

박정하・박덕흠・송석준

최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,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.1%에 불과함.

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7조 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) ① 신축 (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)하는 건축물로서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이 조에서 "인증"이라 한다)을 받은 건축물 (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- 1. 예비인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
- 2.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
- ③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

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. 다만,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이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 득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7조의3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
	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) ①
	신축(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
	다)하는 건축물로서 「장애인
	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
	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
	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
	인증(이하 이 조에서 "인증"이
	라 한다)을 받은 건축물(예비인
	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다)
	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
	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
	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
	경감한다.
	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
	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
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
	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
	를 추징한다.
	1. 예비인증으로 취득세를 경감
	받은 후 인증을 신청할 수 있
	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

증을 받지 못한 경우

- 2.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 증이 취소된 경우
- ③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. 다만,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 감받은 건축물이 그 인증을 받 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 세를 추정한다.